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10771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현민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11. 접수 제36786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C은 2021. 1. 5. 원고에게 차용금이 20,000,000원으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와 C의 부친인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2. 25.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들인 C, F, 피고가 있었다.

다. 한편 E가 2016. 4. 1. 사망하였고, D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7. 대위신청인 G에 의하여 2009. 2.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C, 피고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 F, 피고는 2019. 8. 1. D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9. 8.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21. 5.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1, 2순위 상속인은 없고 3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인 피고와 F이 있었는데, 피고는 2021. 8. 5. 부산가정법원 2021느단1646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위 법원이 2021. 8. 6.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고, F이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10, 1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H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인 C에게 2014. 1.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2021. 1. 5. 그 동안의 대여금을 20,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C이 차용금을 불법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금전거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판단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임을 요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는지 보건대, C이 2021. 1. 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1호증의 3, 갑 4호증, 을 2, 3, 4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과 사이에 2014. 1. 1.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금원을 대여하고 수시로 변제받는 등 금전거래를 한 점, ② 이후 원고는 C에게 2016. 1. 22. 1,000,000원, 2016. 2. 22. 1,000,000원, 2016. 9. 20. 100,000원, 2018. 12. 7. 1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③ 원고는 2020. 6. 27.경부터 C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여 다음날 이를 변제받는 등 다시 금전거래를 한 점, ④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 시점(2019. 8. 1.)이 포함된 2018. 12. 7.과

2020. 6. 27.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2020. 12. 24. 19:00경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서 그 직후인 같은 날 19:02경 “총 470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⑥ 2020. 12. 24. 이전의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원고는 2020. 10. 24. C으로부터 1,000,000원을 입금받은 뒤 같은 날 C에게 1,700,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고, 2020. 11. 7. 2,000,000원, 2020. 11. 8. 3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으며, 2020. 11. 8. 3,000,000원을 C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같은 날 C에게 3차례에 걸쳐 3,000,000원을, 2020. 11. 28. 5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⑦ 따라서 원고가 2020. 12. 24.경 C에게 말한 대여금 잔액 4,700,000원<sup>1)</sup>은 그 직전의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2020. 10. 24.부터의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 ⑧ 이후 원고는 C에게 2021. 1. 4. 200,000원을, 2021. 1. 5. 10:20경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21. 1. 5. 10:21경 C에게 “너 지금 현재 900 빌려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⑨ 원고의 모친인 G이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625호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2. 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G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8. 2. 27. 확정되었으나,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대여금채권자는 G이지 원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⑩ 이후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4. C으로부터 24,000,000원을 변제받고 2018. 5. 10.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 당시인 2019. 8. 1.경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1) 2020. 10. 24.자 대여금 1,700,000원+2020. 11. 7.자 대여금 2,000,000원+2020. 11. 8.자

대여금 300,000원-2020. 11. 8.자 변제금 3,000,000원+2020. 11. 8.자 대여금  
3,000,000원+2020. 11. 28.자 대여금 500,000원+2020. 12. 24.자 대여금 200,000원